

투자위험등급 3등급[다소높은위험]						이지스자산운용(주)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실제 수익률의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 을 감안하여 3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이지스글로벌고배당리츠플러스부동산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지스글로벌고배당리츠플러스부동산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이지스글로벌고배당리츠플러스부동산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이지스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igisam.com)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2026년 6월 22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26년 7월 10일
6. 모집 또는 매출증권의 종류 및 수 모집(매출) 종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10조 좌
7. 모집 또는 매출기간 (판매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모집개시일: 2020년 05월]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의 본점 및 판매회사 영업점

※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투자설명서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 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CONTENTS)

요약정보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7.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위탁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8.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 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10.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신청시의 예상 환매금액보다 실제 수령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11.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관할 국가가 대한민국 이외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 국가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이 집합투자증권이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증권은 외화표시 자산에 투자하므로 외화 표시 자산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투자대상인 해외 집합투자증권의 운용전략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13. 집합투자업자는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요약정보

작성기준일: 2026년 6월 22일

이지스글로벌고배당리츠플러스부동산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펀드코드: D4549]

투자위험등급					
3등급[다소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지스자산운용(주)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실제 수익률의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입니다.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 집합투자증권 투자에 따른 재간접투자신탁의 투자위험,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함에 따른 부동산 관련 투자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이지스글로벌고배당리츠플러스부동산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50%를 초과하여 글로벌 선진국(미국, 캐나다, 유럽, 아시아)에 상장된 부동산관련 집합투자증권(REITs) 및 부동산 주식에 분산투자하여 배당수익 및 자본수익을 추구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부동산(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 가능), 추가형(추가납입 가능), 종류형,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해당 없음										
투자비용	클래스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 천원)				
		판매 수수료	총 보수	판매 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선취수수료-오프라인형(A)	납입금액의 1.0%이내	1.475	0.600	0.630	1.6001	262	430	604	968	1,99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없음	1.855	0.980	1.950	1.9832	203	413	628	1,079	2,327
	선취수수료-온라인형(A-e)	납입금액의 0.5%이내	1.175	0.300	1.250	1.2998	183	320	462	763	1,617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없음	1.365	0.490	2.130	1.4917	153	311	475	819	1,791
(주1)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 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 비용(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으로, 수수료율 및 총보수, 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 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3)'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 비용(2026년 5월 29일 기준)을 의미합니다. (주4)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되는 경과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종류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5.06.23 ~ 26.06.22	24.06.23 ~ 26.06.22	23.06.23 ~ 26.06.22	21.06.23 ~ 26.06.22					
	선취수수료-오프라인형(A)	8.53	5.95	5.35	-1.36	2.16				
	비교지수(%)	11.53	11.77	9.65	2.20	5.19				
	수익률 변동성	10.21	12.03	13.31	15.15	14.72				
	(주1)비교지수: FTSE EPRA/NAREIT Developed Index total return 90% + 매경 BP Call 10% (주2)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 기간 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나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4)선취수수료-오프라인형(A) 클래스의 수익률을 대표로 기재하였고, 다른 종류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수익률(부동산)				운용경력 년수
						운용역		운용사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억원)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강희선	1981	상무	13	9,991	10.74%	13.90%	10.74%	13.90%	14년6개월
	이건희	1987	매니저	13	9,991	10.74%	13.90%			13년5개월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4개 / 3,631억 원] (주1)"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팀운용 방식으로 운용되며 책임운용전문인력 부재 등 상황에 따라 해당 팀 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주2)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 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간이투자설명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주요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보호되지 않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이 투자신탁은 편입 자산(주로 해외 상장 부동산 투자신탁 혹은 주식)의 실적에 따라 투자신탁의 실적이 결정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각 투자신탁의 가격변동에 의해 원금 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 관련 종목의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은 정부정책 경기사이클 개별기업 및 투자신탁의 수익성 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러한 외부변수들의 변화는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익 혹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산의 제한된 유동성 위험	이 투자신탁은 자산의 일부를 유동성이 낮은 유가증권이나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가증권 및 금융상품은 쉽게 처분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한 시기 동안 계약, 법률 또는 규제당국에 의해 처분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화자산에 투자하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달러(USD), 유로(EUR) 및 일본엔(JPY) 등 주요통화에 환헤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목표 환헤지 비율은 환헤지 가능 순자산의 80%~110%). 그러나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 개방형이므로 외화자산의 환위험에 대한 100% 헤지는 불가능하며, 투자신탁 설정·해지, 환율변동, 주가변동, 포트폴리오 변경 및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 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으며 펀드 규모가 작거나 빈번한 설정·해지 등의 경우에는 효율적 환헤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로 부동산관련 집합투자증권(REITs) 및 주식에 투자하며 그러한 회사들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하여 특수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부동산 가치가 경기의 영향을 받는 특성(cyclical nature), 일반적인 경제상황 또는 지역적인 경제상황과 관련된 위험, 과밀건축 및 경쟁 증가, 재산세 및 운영비용 증가, 인구통계학적 임대수입이 인구통계에 따르거나 변동하는 점, 건축규제 법령의 변동, 사고 또는 수용 손실, 환경적 위험, 임대 제한 규정, 인접지역 가치 변동, 관련 당사자 위험, 점유권에 대한 소송에서의 변동, 이자율 상승 및 기타 부동산 자본시장의 영향 등을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의 상승은 자금조달 비용을 증가시키며, 이로 인해 부동산투자회사 주식들에 투자한 경우 투자신탁의 가치가 직간접적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3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	환매 방법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4영업일 기준가격으로 8영업일에 대금 지급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4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		17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5영업일 기준가격으로 9영업일에 대금 지급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기준가격은 그 산정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순자산 총액(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그 산정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 집합투자업자(www.igisam.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이지스자산운용(주) (대표전화: 1544-7373, 인터넷홈페이지: www.igisam.com)			
모집기간	2020년 05월	모집·매출 총액	10조 좌	
효력발생일	2026년 07월 10일	존속기간	해당사항 없음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igisam.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 기구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종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 입니다. 따라서 3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 입니다. 따라서 3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후취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며, 집합투자증권 매수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 환매시 판매사가 정하는 판매수수료의 비율로 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 됩니다.
	온라인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온라인 슈퍼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집합투자기구[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집합투자기구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무권유 저비용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투자자 전용으로,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	집합투자증권 및 기관투자자 등에 한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방침에 따른 고액거래자용 및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이며 각 펀드별로 가입자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전용 등의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주1)기타에 해당하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5)종류별가입자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가. 명칭: 이지스글로벌고배당리츠플러스부동산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협회단축코드:D4549]

나. 종류

종류(클래스)		펀드코드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D4550
A-e	수수료선취-온라인	D4551
A-G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D4552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D4553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D4554
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D4555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D4556
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객	D4557
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D4558
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D4559
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D4560
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D4561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D4562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D4563
S-P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D4564
S-P2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D4565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부동산(재간접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종류형(판매보수 및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 투자신탁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투자대상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해당없음

3. 모집예정금액

10조좌(최초설정일 기준 1좌 1원)

(주1)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2)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모집개시일: 2020 년 05 월]

나. 모집장소: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www.igisam.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 또는 배정절차 및 방법: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제 2 부의 내용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이지스글로벌고배당리츠플러스부동산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D4549
수수료선취-오프라인	D4550
수수료선취-온라인	D4551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D455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D4553
수수료미징구-온라인	D455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D455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D455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D455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D4558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D455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D456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D456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D4562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D4563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D4564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D4565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일 자	내 용
2020 년 06 월 8 일	투자신탁 최초설정
2021 년 06 월 03 일	책임운용역 변경(강희선,최상돈,이건희)→(강희선,이건희)
2021 년 12 월 23 일	1) 정기결산으로 인한 갱신 2)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22 년 04 월 06 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기간 연장)
2022 년 11 월 4 일	1) 정기결산으로 인한 갱신 2)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추가반영

2023 년 03 월 14 일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우리펀드서비스 → 신한아이타스)
2023 년 6 월 21 일	1) 정기결산으로 인한 갱신 및 투자위험등급 산정 기준 변경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기준 2 등급 → 실제 수익률 변동성 기준 2 등급) 2)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현황 업데이트 3)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 4) 소득세법 개정 반영 5) 일반사무관리회사 사명 변경 반영
2024 년 07 월 04 일	1) 정기결산으로 인한 갱신(위험등급 분류기준 개편안(97.5% VaR) 반영, 재무정보 확정) 2)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현황 업데이트 3)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2024.03.01) 4) 자본시장법 등 관련 규정 개정사항 반영 5)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6)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업데이트(연금세제) 7)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업데이트
2024 년 09 월 05 일	S 클래스(S, S-P, S-P2) 가입자격 변경
2025 년 07 월 04 일	1) 정기결산으로 인한 갱신(Var 변동, 재무정보 확정) 2)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현황 업데이트 3) 세법 개정사항 반영 (외국납부세액) 4) 채권평가회사 주소지 변경
2026 년 07 월 10 일	1)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2026.06.07) 2)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97.5% VaR) 변경 (32.94% → 27.45%) 3) 위험등급 변경(2 등급 → 3 등급)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저축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함)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해산)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이지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여의도동 세우빌딩) 14 층 (대표전화: 1544-7373, www.igisam.com)

(주1)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2026.06.22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지구 연평균수익률(부동산)				운용경력 년수
			집합투자 지구 수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강희선	1981	상무	13	9,991	10.74%	13.90%	10.74%	13.90%	14년6개월
이건희	1987	매니저	13	9,991	10.74%	13.90%			13년5개월

성명	주요 운용경력
강희선	· 삼성에버랜드(주) 리조트사업부 (3 년) ·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개발팀 (1 년) · 한화자산운용 글로벌 AI 팀/부동산투자팀 (4 년 4 개월)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전략실 (2 년 6 개월) · 이지스자산운용(주) 대체증권투자파트 (7 년 9 개월)
이건희	· 한화자산운용 Asia Equity 운용팀 (4 년 11 개월) · 한화생명 인도네시아법인 (1 년) · 이지스자산운용(주) 대체증권투자파트 (8 년 6 개월)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4개 / 3,631억 원]

(주1)'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대체증권투자파트에서 공동 운용합니다.

(주2)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상기 연평균 수익률은 집합투자업자 내부자료를 근거로한 수익률로 동종(리테일)의 수익증권(지분증권) 투자금액 대비 현금배당금을 기준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나.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동 사항

책임운용전문인력	운용기간
최상돈	2020.06.08~2021.06.02
강희선, 이건희	2021.06.03~ 현재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부동산(재간접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이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 입니다. 따라서 3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수수료 미징구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 입니다. 따라서 3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수수료 후취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며, 집합투자증권 매수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 환매시 판매사가 정하는 판매수수료의 비율로 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슈퍼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집합투자기구[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집합투자기구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무권유 저비용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투자자 전용으로,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	집합투자증권 및 기관투자자 등에 한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방침에 따른 고액거래자용 및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이며 각 펀드별로 가입자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전용 등의 집합투자기구입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 명칭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가입자격 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경우로,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 창구 판매수수료•보수 보다 낮은 판매 수수료•보수가 적용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가입자격 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법 제8조 제5항에 따른 투자자문업자로부터 법 제6조 제7항에 따른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요청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투자권유 없이 본 집합투자증권의 매입하는 투자자 전용으로, 판매 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집합투자기구 명칭	가입자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투자자 전용 수익증권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 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나.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 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C-I)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 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 연금(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 계좌”의 가입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 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 금(C-Pe)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 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 연금(C-P2)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 업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 금(C-P2e)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 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 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또는 법 시행령 제103조에서 규 정하는 금전신탁이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 익증권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 스(S-T 및 S-P 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 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 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 인연금(S-P)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 스(S-T 및 S-P 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 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 좌”의 가입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 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 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 직연금(S-P2)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 스(S-T 및 S-P 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집합투자기구 명칭	가입자격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3) 종류별 수수료 및 보수에 관한 사항

가입자격	수수료율			보수(연, %)			
	선취 판매	후취 판매	환매	집합 투자	판매	신탁	일반 사무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0% 이내	-	-	0.800	0.600	0.045	0.030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 이내	-	-	0.800	0.300	0.045	0.030
수수료선취-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A-G)	납입금액의 0.7% 이내	-	-	0.800	0.420	0.045	0.03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	-	-	0.800	0.980	0.045	0.030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	-	-	0.800	0.490	0.045	0.03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C-G)	-	-	-	0.800	0.680	0.045	0.03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기관(C-F)	-	-	-	0.800	0.030	0.045	0.03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고액(C-I)	-	-	-	0.800	0.290	0.045	0.03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C-P)	-	-	-	0.800	0.640	0.045	0.030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 인연금(C-Pe)	-	-	-	0.800	0.320	0.045	0.03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C-P2)	-	-	-	0.800	0.360	0.045	0.03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 직연금(C-P2e)	-	-	-	0.800	0.180	0.045	0.03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	-	-	0.800	0.000	0.045	0.030

가입자격	수수료율			보수(연, %)			
	선취 판매	후취 판매	환매	집합 투자	판매	신탁	일반 사무
랩(C-W)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	3년미만 환매금액의 0.15% 이내	-	0.800	0.230	0.045	0.030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개인연금(S-P)	-	-	-	0.800	0.200	0.045	0.030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퇴직연금(S-P2)	-	-	-	0.800	0.170	0.045	0.030

(주1)선취판매수수료율 및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 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2)가입자격의 자세한 사항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종류별 가입 요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구분	투자대상	세부내용	투자한도
①	집합투자증권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이와 같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50% 초과
	법 제229조에 따른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 등		
②	주식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50% 미만

구분	투자대상	세부내용	투자한도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 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주식"이라 한다)	
③	채권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채권"이라 한다)	50% 미만
④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50% 미만
⑤	어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50% 미만
⑥	장내파생상품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해외장내파생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10% 이하 (투자신탁 자산총액 기준)
⑦	장외파생상품	법 제5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통화나 통화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해외장외파생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	
⑧	환매조건부매도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 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음)	50% 이하
⑨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구분	투자대상	세부내용	투자한도
⑩	증권의 차입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⑪	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가.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 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 다.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라. '가' 및 '다'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 ⑤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아래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한도를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 ⑤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1) 증권 대여: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 대여를 진행할 수 있다.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2) 증권 차입: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 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다.			

※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예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구분	내용	예외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투자신탁자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 분의 40 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5 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이 투자신탁자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 제11항, 제77조 제4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 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동일종목투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최초 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구분	내용	예외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 시행령 제 80 조 제 1 항 제 1 호 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 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 31 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 32 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 4-52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 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구분	내용	예외
동일법인 및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에의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파생상품투자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 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 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후순위채권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투자한도 적용의 유예	집합투자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다. 자금의 차입

(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 ②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 ③ 그 밖에 투자신탁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 시행령 제 83 조 제 2 항으로 정하는 때

- (2)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3) 제 1 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4)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신탁계약서 제 15 조 제 2 항 제 1 호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5)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① 투자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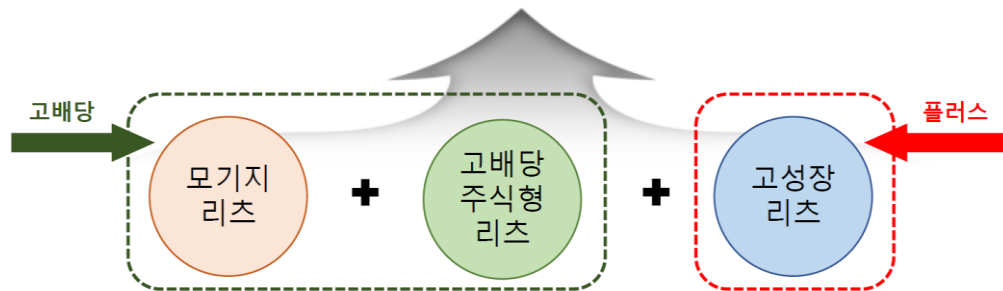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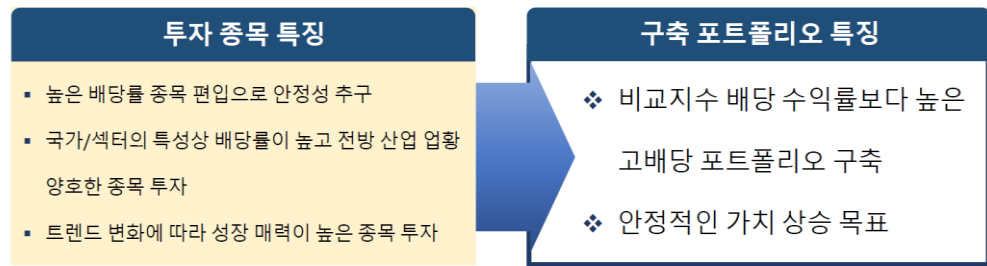
-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상장된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신탁 재산의 50% 이상을 국내·외 리츠 및 부동산 관련 주식에 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 상승 및 배당 등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리츠는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으로 수익성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대출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개발하여 임대료, 매각 차익 등을 통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 또는 투자신탁입니다. 리츠는 크게 주로 수익성 부동산을 보유하는 '주식형 리츠'와 부동산 대출 상품 위주로 투자하는 '모기지 리츠'로 나뉩니다.

② 주요 투자전략

- 리츠는 투자 자산에 따라 다양한 하위 섹터로 구분됩니다. 주거, 리테일, 오피스, 산업용 등 전통적인 분야 외에도 헬스케어, 호텔&리조트, 데이터센터, 개인용창고, 통신탑 등 비전통적인 분야가 있습니다. 당사는 전세계 지역별로 하위 섹터를 구분하여 부동산 업황 및 개별 리츠에 대한 직접 리서치를 수행하며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도가 높은 우량 종목을 선별하여 투자합니다.
- 산업의 트렌드 변화에 따라 성장 매력도가 높은 종목, 국가 또는 섹터의 특성상 배당률이 높으면서 전방 산업 업황이 양호한 종목,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률로 포트폴리오의 배당률을 높일 수 있는 종목 등이 주요 투자대상입니다.



- 리츠 밸류에이션 평가 시 활용될 수 있는 지표*(FFO, NAV, NOI, 부채비율 등)를 활용하여 투자의 적절성과 적시성을 파악한 뒤 투자 매력도에 따라 투자 비중을 결정합니다.

* FFO: Funds From Operation의 약자로 리츠 섹터에서 쓰이는 이익 측정 지표. 순이익 (net income)에 감가상각비를 다시 더하고 부동산 매각 차익이나 손해를 빼 리츠의 이익을 부동산 특성에 맞게 현실화시킨 지표

* NAV: Net Asset Value. 순자산가치. 부동산 자산으로 구성된 리츠의 현재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 NOI: Net Operating Income. 부동산 자산에서 나온 총이익에서 부동산 운용 비용을 뺀 금액

③ 투자 프로세스

- 1) 유니버스 구성: 정량적 지표를 이용하여 투자 가능 유니버스 선정
- 2) 지역별 섹터 업황 분석: 거시 지표, 부동산 수급 및 펀더멘탈, 정책, 전방산업 트렌드 등을 파악하여 지역별 섹터 업황의 투자 매력도 파악
- 3) 종목 선정: 지역별 섹터 업황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실질 부동산 가치와 가격 괴리도가 큰 종목 등을 선별하여 성장성, 안정성, 리스크 요소 등을 기반으로 종목 선정
- 4) 포트폴리오 구축: 투자 매력에 가장 높은 종목들로 포트폴리오 구축 및 주기적 혹은 필요시 리밸런싱

※ **비교지수**: FTSE EPRA/NAREIT Developed Index total return 90% + 매경 BP Call 10%

- FTSE EPRA/NAREIT Developed Index total return: 글로벌 주요 선진국의 리츠 및 부동산 관련 주식을 대표하는 지수로서, 영국 AIM 시장뿐만 아니라 개발 및 신흥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부동산 업종을 대표하는 지수임.

- 매경 BP Call: 한국채권평가에서 발표하는 단기자금시장지수 중 하나로서, 콜금리의 변동 성과를 보여주는 유동성 지수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비교 등을 위해서 위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며, 시장 상황 및 투자전략변경, 새로운 지수의 등장에 따라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2) 위험관리

① 위험관리 체계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 자산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체계를 실행합니다.

- 1) 사전적 위험관리: 운용부서의 운용계획, 위험 관리요소를 사전에 정립하고 공유하여 투자전략의 준수여부를 상시 감독
- 2) 상시 위험관리: 국가 및 부동산 시장의 위험 요인, 투자 종목 이슈 등을 매일 확인하여 빠른 대응 준비
- 3) 사후적 위험관리: 투자 성과의 위험 수준을 평가하여 개선점 보완

② 환 위험관리

1) 환헤지 여부 및 환헤지 방법

이 투자신탁은 외화표시자산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환율 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선진국 통화(미달러(USD), 유로(EUR) 및 일본엔(JPY) 등)표시 자산에 대해서 해당 통화 관련 장내 및 장외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환헤지 전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통화 표시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 별도의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예정으로 기타통화 표시 집합투자증권 투자 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2) 환헤지 장단점

환헤지란 통화관련 장내 또는 장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원화대 외화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환헤지의 장점은 환율 하락(원화평가절상)시 발생하는 환차손(환율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헤지포지션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으므로 환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환헤지의 단점은 환헤지할 경우 환율 상승(원화평가절하)시 발생하는 환차익(환율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헤지포지션에서 발생한 손실에 충당해야 하므로 환차익을 얻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환위험 헤지시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환헤지를 수행한다고하여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이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

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3) 목표 헤지비용

100% 환헤지는 불가능하며 전체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해 헤지 가능한 주요 통화 표시자산의 환율변동위험에 대해서만 통화 관련 선물(Futures, 장내파생상품) 또는 선물환(Forward, 장외파생상품) 등을 통하여 환위험을 헤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목표 환헤지 비율은 환헤지 가능한 주요통화 순자산의 70% 이상이며, 그 비율은 100%를 초과할 수도 있음), 기타 환헤지 수단이 없는 국가의 현지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대해서는 환헤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보유자산의 가격변동, 환율 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 헤지비율과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4) 환헤지 비용 등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며, 환헤지 계약 만기 후 재계약(roll-over)시 시장환율 및 선물환 프리미엄 등에 따라 헤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 비용은 환헤지 관련 파생상품의 계약환율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산출은 불가능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 신고)하여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50%를 초과하여 글로벌 선진국에 상장된 부동산관련 집합투자증권(REITs)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글로벌 선진국 리츠의 배당수익과 자본이익이 주된 수익이며,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 및 환율의 변동 등에 따라 투자신탁의 수익률(투자수익/손실)이 결정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수익구조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 시 인지해야 할 위험들

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투자신탁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고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증권 등 가격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로 글로벌 및 선진국에 상장된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 및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가치도 하락하게 되므로 투자 판단 시 유의하사기 바랍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화자산에 투자하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달러(USD), 유로(EUR) 및 일본엔(JPY) 등 주요통화에 환헤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목표 환헤지 비율은 환헤지 가능 순자산의 80%~110%). 그러나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 개방형이므로 외화자산의 환위험에 대한 100% 헤지는 불가능하며, 투자신탁 설정·해지, 환율변동, 주가변동, 포트폴리오 변경 및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 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으며 펀드 규모가 작거나 빈번한 설정·해지 등의 경우에는 효율적 환헤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자율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거시경제지표 및 기타 정치·경제 상황, 정책변화 등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해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이득 및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이 투자신탁은 편입 자산(주로 해외 상장 부동산 투자신탁 혹은 주식)의 실적에 따라 투자신탁의 실적이 결정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입니다. 각 투자신탁의 가격변동에 의해 원금 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 관련 종목의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은 정부정책 경기사이클 개별기업 및 투자신탁의 수익성 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러한 외부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변수들의 변화는 투자신탁 재산가치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익 혹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법규정 테두리 안에서 헤지, 대안투자로 파생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시장의 변동성이 클수록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재간접 투자신탁의 위험	본 투자신탁은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해당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의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대상인 부동산관련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의 운용전략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 자산의 부도 등 신용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권리행사 요구 및 처리과정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피집합투자기구를 직접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피집합투자기구가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이 투자신탁에 대한 운용 관련 규정을 벗어나서 운용될 수도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글로벌리츠 등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은 글로벌 리츠(REITs) 및 부동산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고 이외 채권, 어음 등에도 투자함으로써 해당 투자대상은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 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펀더멘탈 또는 경영상황 부진에 따른 위험	리츠 및 부동산관련 주식의 수익은 리츠가 보유한 자산들이 속한 섹터나 지역의 펀더멘탈 악화, 개별 자산들의 공실률 증가 및 임대료 하락, 부채율의 증가 등에 영향을 받으며, 그 외 높은 밸류에이션 때문에 차익실현 압력을 받아 신탁재산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리변동위험	시장금리가 변동함에 따라 차입금의 상환부담이 커져 리츠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 위험	투자설명서의 조건에 따라 투자신탁은 주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발행한 양도가능 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회사들의 주식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하여 특수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부동산 가치가 경기의 영향을 받는 특성(cyclical nature), 일반적인 경제상황 또는 지역적인 경제상황과 관련된 위험, 과밀건축 및 경쟁 증가 재산세 및 운영비용 증가, 인구통계학적 임대수입이 인구통계에 따르거나 변동하는 점, 건축규제 법령의 변동 사고 또는 수용 손실 환경적 위험, 임대 제한 규정, 인접지역 가치 변동, 관련 당사자 위험, 점유권에 대한 소송에서의 변동, 이자율 상승 및 기타 부동산 자본시장의 영향 등을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의 상승은 자금조달 비용을 증가시키며, 이로 인해 부동산투자회사 주식들에 투자한 경우 투자신탁의 가치가 직간접적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각 국의 법적 규제와 정치적 위험	이 투자신탁은 전세계에 걸쳐 분산투자하므로 해당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에 의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각 정부의 정책 및 법적 제한은 투자신탁이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금액 및 유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시장가격, 유동성, 증권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투자신탁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 조세 및 규제위험, 투자자에 관한 정보공개	투자신탁에 불리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률, 조세 및 규제당국의 변경이 투자신탁의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계열사, 기타 투자신탁이나 집합투자업자의 서비스제공회사, 대행회사는 투자신탁이 투자하거나 공개당사자에 대한 관할권을 보유하거나 관할권을 주장하는 일부 국가의 규제당국에게 투자신탁 지분의 특정 비율 이상을 실제로 소유한 수익자의 이름을 포함 투자신탁과 수익자에 관한 정보 공개를 수시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 상 부동산 관련 산업/업종의 주식 및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 집중 투자하며, 부동산 업종 내 특정 섹터에 해당하는 종목에 집중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주식시장 전체를 투자 대상으로 하는 일반 주식형 펀드 또는 글로벌 부동산 시장 전체를 투자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부동산 펀드 등에 비하여 원금 손실 위험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순자산가치 변동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위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 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 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간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퍼레이션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환매연기 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 “제2부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신탁 해지 위험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집합투자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해당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소규모의 위험	투자신탁의 설정금액이 소액이거나, 환매 등에 의해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분산투자 등 투자목적 달성을 위한 원활한 투자신탁 운용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대차 거래 위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파악된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위험을 명시한 것으로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투자위험등급: 3 등급	다소 높은 위험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선진국에 상장된 리츠 및 부동산 관련 주식에 투자하며, 실제 수익률의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기준으로 투자위험 6 등급 중 3 등급에 해당되는 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 상품은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 하락과 환율변동에 따른 원본손실 위험을 충분히 감내할 만한 위험선호도를 지니고 있으며, 상기 위험 수준을 이해하고 다소	

높은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이 기준에는 신용위험 및 운용위험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증권신고서 작성일 현재 이 투자 상품은 '실제 수익률의 변동성'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97.5% VaR 모형* 사용) : 27.45%)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 97.5% VaR 모형 :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

등급	1 등급 (매우 높은 위험)	2 등급 (높은 위험)	3 등급 (다소 높은 위험)	4 등급 (보통 위험)	5 등급 (낮은 위험)	6 등급 (매우 낮은 위험)
97.5% VaR (일간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상액)	50% 초과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 이하

※ 상기 위험등급분류는 집합투자업자의 분류기준에 의한 등급으로,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위험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1 좌 단위로 매입이 가능하며, 최초설정시 수익증권 1 좌당 가격은 1 원입니다.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

(2) 매입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① 17시(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T)로부터 3영업일(T+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② 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T)로부터 4영업일(T+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1영업일(T)	3영업일(T+2)	4영업일(T+3)
17시(오후 5시) 이전 매입시	자금납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집합투자증권 교부일	-
17시(오후 5시)	자금납입일	-	기준가격 적용일

	1영업일(T)	3영업일(T+2)	4영업일(T+3)
경과 후 매입시			집합투자증권 교부일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 매입청구의 취소 및 정정은 매입청구일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3) 선취판매수수료

- ① A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납입금액의 1.0% 이내
- ② A-e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납입금액의 0.5% 이내
- ③ A-G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납입금액의 0.7% 이내
- ④ 그 외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해당사항 없음

※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4) 종류별 가입요건

집합투자기구 명칭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가입자격 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경우로,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 창구 판매 수수료•보수 보다 낮은 판매 수수료•보수가 적용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가입자격 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법 제8조 제5항에 따른 투자자문업자로부터 법 제6조 제7항에 따른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요청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투자권유 없이 본 집합투자증권의 매입하는 투자자 전용으로, 판매 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투자자 전용 수익증권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나.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집합투자기구 명칭	가입자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또는 법 시행령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금전신탁이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S-T 및 S-P 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S-T 및 S-P 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S-T 및 S-P 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5) 매입 청구의 취소·정정 등

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 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17 시(오후 5 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 시(오후 5 시) 경과 후 매입 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 가능 시간까지만 매입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나. 환매

(1) 환매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경우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환매도 가능)

※ 환매 가능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시 비용 발생	중도환매 허용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2) 환매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① 17시(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T)로부터 4영업일(T+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8영업일(T+7)에 환매금액 지급
- ② 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T)로부터 5영업일(T+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9영업일(T+8)에 환매금액 지급

	1영업일(T)	4영업일(T+3)	5영업일(T+4)	8영업일(T+7)	9영업일(T+8)
17시(오후 5시) 이전 환매 청구시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	환매대금 지급일	-
17시(오후 5시) 경과 후 환매 청구시	환매청구일	-	기준가격 적용일	-	환매대금 지급일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 매입청구의 취소 및 정정은 매입청구일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3) 후취판매수수료

- ① S클래스 집합투자증권: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 ② 그 외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해당사항 없음

(4)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5) 집합투자증권의 일부환매: 투자자는 이 투자신탁에 대해 일부환매를 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집합투자증권을 교부합니다

(6)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투자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투자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투자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날의 6영업일 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7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투자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투자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 사유

-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투자자의 이익 또는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투자자총회 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9)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 17 시(오후 5 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 시(오후 17 시) 경과 후 환매 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가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다. 전환

해당사항 없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기준가격은 그 산정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순자산총액(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그 산정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클래스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클래스간 판매회사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클래스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고·게시하지 아니합니다.
공시주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집합투자업자(www.igisam.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주1)공휴일·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집합투자기구재산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text{기준가격} = \frac{\text{펀드의 순자산총액}}{\text{총 좌수}}$$

(주2)기준가격은 매일 산정, 공고·게시하지만, 평가일 현재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어 공정가액을 적

용하는 평가대상 자산은 매일 해당하는 공정가액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공고·게시된 기준가격은 실제 공정가액을 반영한 가치와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원칙

구 분	평가원칙
시가	1. 집합투자재산은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장부가격 평가를 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채권 등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가로 조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공정가액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법 제 79 조 제 2 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가 제공한 가격 가. 채권평가회사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다. 신용평가업자 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마.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자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인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장부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상기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그 차이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구 분	평가원칙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 자산	부동산의 평가는 취득가격에 의하되, 부동산의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정하는 가액에 의한다. 대출채권의 평가는 장부가로 하며, 이자계산기간단위로 대출이자율에 의한 이자총액을 확정하고 이를 일할 계산한다.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가격 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무증권	상장채무증권(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에 한한다)의 평가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 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무증권 및 기타 채무증 권	비상장채무증권, 기업어음 및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 등 비상장 채무증권과 유사한 증권 등은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으로 평가.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그 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
기타자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

(3)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평가

구 분	분류기준	평가방법
부실우려단계 의 채권 등	가. 이자 1회 연체 나. 1개월 이상 조업중단 다. 최근 3개월 이내에 1차 부도 발생	위원회를 개최하여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제공되는 시가 또는 발행 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하되, 장부가격으로 평가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조정하여 평가한다.
발생단계의 부도채권 등	가. 부도 또는 지급불능사태 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회생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부실금융기관에 해당 라. 채무초과 등 부실한 재무상태로 인하여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주된 영업의 정지나 퇴출 결정	분류일에 원금의 80%(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원금의 50%)이상을 상각하고 분류일부터 발생하는 이자의 추가계상은 중지한다. 다만, 부도채권 등의 원리금 회수 가능성 및 회수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금의 20%(마목은 50%)을 초과하여 회수할 수

구 분	분류기준	평가방법
	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채권은행(이하 "주채권은행"이라 한다)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관리절차(이하 "관리절차"라 한다)를 신청(사적 회생절차개시 신청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따라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으로 선정 포함) 바. 그 밖에 당해 증권 등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때	있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평가한 가액을 근거로 하여 상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판단근거자료를 보관, 유지하여야 한다.
개선단계의 부도채권 등	가. 부실우려단계로 분류된 원인의 해소 나. 부도 또는 지급불능사태의 해소 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회생절차 개시결정 라. 주채권은행의 관리절차 개시결정(사적 회생절차개시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따른 기업개선약정 체결 포함) 마. 그 밖에 당해 증권 등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가능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때	회생계획안, 금융기관관리안 등 채무재조정 계획과 원리금의 회수가능성 및 회수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부도채권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재평가금액이 부실우려단계 및 발생단계의 평가금액보다 큰 경우 에는 그 차액을 평가이익으로 처리하고, 작은 경우에는 차액만큼 상각 처리한다.
악화단계의 부도채권 등	가. 상법 등에 따른 청산절차의 개시 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 회생절차 폐지결정 또는 파산선고 다. 주채권은행이 관리절차에 들어가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관리절차의 중단 결정(사적 회생절차중단,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부결 또는 약정 미체결 포함) 라. 그 밖에 당해 증권 등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때	당해 부도채권 등의 발행인의 순자산, 그 밖에 원리금의 회수가능성 및 회수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부도채권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재평가금액이 부실우려단계 및 발생단계의 평가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평가이익으로 처리하고, 작은 경우에는 차액만큼 상각처리한다.

※ 유동화증권에 대한 평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유동화증권에 대하여는 발행인의 순자산, 그 밖에 원리금의 회수가능성 및 회수시기, 처분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가 평가한다. 다만, 2001. 9. 1 이전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 31 조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가 특정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양도받은 채권 등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후순위채권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4)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등

구 분	주요내용
구성	대표이사, 평가업무 담당임원,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기타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업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1.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사항 3.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4. 부실채권 등 부실자사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재산 평가 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7.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8. 기타 자산의 평가에 관하여 관련법규 및 신탁계약서에서 위임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집합투자기구 명칭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 수수료	후취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	전환 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1.0% 이내	-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 전용으	납입금액의	-	-	-

집합투자기구 명칭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 수수료	후취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	전환 수수료
	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0.5% 이내			
수수료선취-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A-G)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문 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아 가 입하거나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하는 투자자 전용으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 구되는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7% 이내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가입제한이 없으며, 판매수수료 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 전용으 로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C-G)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문 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아 가 입하거나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하는 투자자 전용으로 판매수수료가 징구되 지 않는 수익증권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기관(C-F)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투자자 전용 수익증권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 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 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나.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 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 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고액(C-I)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	-	-

집합투자기구 명칭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 수수료	후취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	전환 수수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또는 법 시행령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금전신탁이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S-T 및 S-P 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	-	3년미만 환매금액의 0.15% 이내	-	-

집합투자기구 명칭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 수수료	후취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	전환 수수료
	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S-T 및 S-P 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S-T 및 S-P 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	-	-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주1)선취판매수수료율 및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 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는 이 집합투자증권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1인당 투자금액 제한 등 가입제한 사항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 이 투자신탁의 관련보수 등

종류	부과비율 (연간,%)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총보수	등종유형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합성총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증권거래비용
A	0.800	0.600	0.045	0.030	1.475	0.630	0.1251	1.6001	1.6001	0.1187
A-e	0.800	0.300	0.045	0.030	1.175	1.250	0.1248	1.2998	1.2998	0.1180
A-G	0.800	0.420	0.045	0.030	1.295	-	-	1.295	1.295	-
C	0.800	0.980	0.045	0.030	1.855	1.950	0.1282	1.9832	1.9832	0.1203
C-e	0.800	0.490	0.045	0.030	1.365	2.130	0.1267	1.4917	1.4917	0.1215
C-G	0.800	0.680	0.045	0.030	1.555	-	-	1.555	1.555	-
C-F	0.800	0.030	0.045	0.030	0.905	-	0.1228	1.0278	1.0278	0.1257
C-I	0.800	0.290	0.045	0.030	1.165	-	-	1.165	1.165	-
C-P	0.800	0.640	0.045	0.030	1.515	-	0.1248	1.6398	1.6398	0.1175
C-Pe	0.800	0.320	0.045	0.030	1.195	-	0.1271	1.3221	1.3221	0.1225
C-P2	0.800	0.360	0.045	0.030	1.235	-	0.1238	1.3588	1.3588	0.1236
C-P2e	0.800	0.180	0.045	0.030	1.055	-	0.1250	1.1800	1.1800	0.1235
C-W	0.800	0.000	0.045	0.030	0.875	-	0.1252	1.0002	1.0002	0.1208
S	0.800	0.230	0.045	0.030	1.105	-	0.1243	1.2293	1.2293	0.1171
S-P	0.800	0.200	0.045	0.030	1.075	-	0.1288	1.2038	1.2038	0.1179
S-P2	0.800	0.170	0.045	0.030	1.045	-	0.1225	1.1675	1.1675	0.1231

종류	부과비율 (연간, %)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총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 · 비용	합성총보수 · 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증권거래비용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후급					-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주1)총보수·비용 비율은 순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기타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주2)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제외)으로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작성하였으므로 실제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클래스 포함)인 경우 수치화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기타비용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구성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 내역, 단위: 천원)
기타비용	감사보수, 펀드평가보수, 채권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해외거래예탁비용, 해외분담금, 보관대리인 보수 등.	14,966

(주3)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작성되었으므로 실제 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수치화된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기타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증권거래비용, 금융비용 및 발행분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발행분담금은 집합투자업자 고유재산으로 납부합니다.

구분	구성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천원)
증권거래비용	국내주식매매수수료, 국내채권매매수수료, 장내파생매매수수료, 기타매매수수료, 콜중개수수료, SWAP 매매수수료, 대차관련수수료, REPO 수수료, 해외주식매매수수료, 해외채권매매수수료, 해외수익증권매매수수료, 해외파생매매수수료 등.	14,559
금융비용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	-
발행분담금	발행분담금	-

(주4)'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 비용을 의미합니다. (2026년 5월 29일 기준)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 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천원)

클래스 종류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262	430	604	968	1,993
A-e	수수료선취-온라인	183	320	462	763	1,617
A-G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202	338	480	779	1,629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203	413	628	1,079	2,327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153	311	475	819	1,791
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159	324	495	853	1,862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105	215	329	570	1,262
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119	243	372	644	1,421
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168	342	521	898	1,955
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136	276	422	729	1,600
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139	284	433	748	1,642
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121	246	377	652	1,438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103	209	320	555	1,229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126	257	392	679	1,495
S-P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123	251	384	665	1,465
S-P2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120	244	373	646	1,424

(주1) 위 예시내용은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2) S클래스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1) 이익배분

-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 ②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①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 ③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④ 투자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에게 인도된 후에는 판매회사가 투자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수익자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시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외국납부세액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 등)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 지급 시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이자·배당소득)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합니다.(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 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2026.12.31)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탁, 회사, 또는 조합(이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이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중 거주자별 투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해서는 9.9%(소득세 9%, 지방소득세 0.9%)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지구를 제외한다)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3. 집합투자재산의 투자액 전부를 제1호 또는 제2호에 투자(투자대기자금의 일시적인 운용 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지구(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지구를 제외한다)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② 제1항을 적용 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내역을 **해당 거주자가 매매를 위**

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거주자가 투자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제1항을 적용 받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고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 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 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사항은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 분	주요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 및 다른 연금계좌로부터 이체 받은 금액은 제외)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저축금액(최대 600만원 한도)의 12%(또는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지방소득세 포함시 13.2%(또는 16.5%)로 세액공제 효과] -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

구 분	주요내용
	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 가능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분리과세)
분리과세한도	1,5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이연 퇴직 소득의 연금수령에 따른 금액은 제외) 연금소득이 1,500만원 초과하는 경우도 종합과세 또는 16.5%(지방 소 득세 포함)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함. (분리과세 선택은 2024 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해지가산세	해당사항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연금소득세 5.5~3.3%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 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일반해지시 과세	기타소득 16.5%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수령한도 이내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과세)

※ 연금저축계좌와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① 세액공제: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최대 600만원 이내의 금액)하여 연간 900만원 한도까지 12%(또는 15%) 세액공제
-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
-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연금인출, 연금 외 인출 등 연금의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르게 결정

※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관련 사항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중도 해지시 적용기준 및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과세에 관하여 판매회사 및 조세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6 기(2025.06.08 ~ 2026.06.07)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5 기(2024.06.08 ~ 2025.06.07)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4 기(2023.06.08 ~ 2024.06.07)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항 목	재무상태표		
	제 6 기	제 5 기	제 4 기
	(2026.06.07)	(2025.06.07)	(2024.06.07)
운용자산	8,851,958,918	15,486,579,081	17,973,128,996
증권	8,348,178,270	14,658,592,216	17,054,119,678
파생상품	-157,650,253	424,710,927	-212,490,911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661,430,901	403,275,938	1,131,500,229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268,064,962	163,522,105	115,103,426
자산총계	9,120,023,880	15,650,101,186	18,088,232,422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390,014,101	26,260,174	60,156,354
부채총계	390,014,101	26,260,174	60,156,354

원본	7,663,069,335	15,111,721,381	17,524,659,524
수익조정금	-864,916,988	-92,979,297	209,316,017
이익잉여금	1,931,857,432	605,098,928	294,100,527
자본총계	8,730,009,779	15,623,841,012	18,028,076,068

(단위 : 원, %)

항 목	손익계산서		
	제 6 기	제 5 기	제 4 기
	(2025.06.08 - 2026.06.07)	(2024.06.08 - 2025.06.07)	(2023.06.08 - 2024.06.07)
운용수익	1,187,058,887	572,394,792	1,068,009,704
이자수익	4,506,036	7,666,265	13,392,357
배당수익	396,592,331	585,332,971	733,371,090
매매/평가차익(손)	785,960,520	-20,604,444	321,246,257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40,601,520	34,379,336	33,357,349
관련회사 보수	0	0	0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40,601,520	34,379,336	33,357,349
당기순이익	1,146,457,367	538,015,456	1,034,652,355
매매회전율	112.61	62.01	24.28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 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 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 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기타수익에 포함되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6기 0백만원, 5기 0백만원, 4기 0백만원 발생)

(주3) 기타비용에 포함되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6기 0백만원, 5기 0백만원, 4기 0백만원 발생)

1) 주식의 매매회전을

(단위 : 주, 백만원, %)

매매회전율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해연도 보유 주식 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 (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1,865	112.61	5.52
57,477	892	96,289	2,100			

주 1) 동종유형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및 일반 공모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여 법 제 229 조에 따른 5 가지 종류의 유형(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외)을 의미합니다.

2)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 : 백만원, %)

구분	당기(2025.06.08 - 2026.06.07)			전기(2024.06.08 - 2025.06.07)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2,992	2.4017	0.08	2,451	2.1903	0.09
주식이외의증권(채권등)	14,845	12.1572	0.08	10,470	8.8814	0.08
부동산	0	0	0	0	0	0
장내파생상품	0	0	0	0	0	0
장외파생상품	0	0	0	0	0	0
기타(REPO,대차,콜 등)	0	0	0	0	0	0
합 계	17,837	15	0.08	12,921	11.0717	0.085

주 1) 주식 중개수수료 등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기재하되, 장외 채권거래와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의 사유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렵거나 부동산 등과 같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수익적 지출 등 비용으로 산정되는 항목은 기재)은 작성을 생략합니다.

나. 재무상태표

(단위 : 원)

과목	제6기(2026.06.07)		제5기(2025.06.07)		제4기(2024.06.07)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661,430,901		403,275,938		1,131,500,229
1. 현금및현금성자산	661,430,901		403,275,938		1,131,500,229	
2. 예치금						
3. 증거금						
대출채권						
1. 콜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8,348,178,270		14,658,592,216		17,054,119,678
1. 지분증권	1,247,937,703		2,167,861,804		2,813,724,571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7,093,635,169		12,498,698,325		14,239,477,284	
4. 기타유가증권	6,605,398		-7,967,913		917,823	
파생상품		-157,650,253		424,710,927		-212,490,911
1. 파생상품	-157,650,253		424,710,927		-212,490,911	
부동산과 실물자산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268,064,962		163,522,105		115,103,426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482,592		482,987		754,097	
4. 미수배당금	10,967,370		35,173,538		25,685,719	
5. 기타미수입금	256,615,000					
6. 기타자산			127,865,580		88,663,610	
7.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9,120,023,880		15,650,101,186		18,088,232,422
부 채						
운 용 부 채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390,014,101		26,260,174		60,156,354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132,619,578		24,247,165		58,539,617	
4. 수수료미지급금	105,520		161,600		170,350	
5. 기타미지급금	256,085,500					
6. 기타부채	1,203,503		1,851,409		1,446,387	
부 채 총 계		390,014,101		26,260,174		60,156,354
자 본						
1. 원 본	7,663,069,335		15,111,721,381		17,524,659,524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1,066,940,444		512,119,631		503,416,544	
(발행좌수 당기: 7,663,069,335 좌						
전기: 15,111,721,381 좌		1,931,857,432		605,098,928		294,100,527
전전기: 17,524,659,524 좌)		-864,916,988		-92,979,297		209,316,017
(기준가격 당기: 1,139.23 원						
전기: 1,033.89 원						
전전기: 1,004.03 원)						
자 본 총 계		8,730,009,779		15,623,841,012		18,028,076,068
부 채 와 자 본 총 계		9,120,023,880		15,650,101,186		18,088,232,422

다. 손익계산서

(단위 : 원)

과 목	제6기(2025.06.08-2026.06.07)		제5기(2024.06.08-2025.06.07)		제4기(2023.06.08-2024.06.07)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401,098,367		592,999,236		746,763,447
1. 이 자 수 익	4,506,036		7,666,265		13,392,357	
2. 배당금수익	396,592,331		585,332,971		733,371,090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3,961,938,036		3,404,551,365		3,858,760,873
1. 지분증권매매차익	212,945,761		41,300,978		21,672,772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1,165,667,027		955,489,464		1,997,857,415	
5. 외환거래/평가차익	1,499,727,887		2,032,688,499		1,622,019,155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1,083,597,361		375,072,424		217,211,531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3,175,977,516		3,425,155,809		3,537,514,616
1. 지분증권매매차손	230,853,715		389,565,819		253,684,481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5. 외환거래/평가차손	1,709,211,211		2,370,378,521		1,858,653,952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8. 기타거래손실	1,235,912,590		665,211,469		1,425,176,183	
운 용 비 용		40,601,520		34,379,336		33,357,349
1. 운용수수료						
2. 판매수수료						
3. 수탁수수료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40,601,520		34,379,336		33,357,349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1,146,457,367		538,015,456		1,034,652,355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149608116		0.035602526		0.059039798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가. 이지스글로벌고배당리츠플러스부동산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Class A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2025.06.08 - 2026.06.07	9	9	0	0	4	5	4	5

2024.06.08 - 2025.06.07	11	11	0	0	3	3	9	9
2023.06.08 - 2024.06.07	13	12	0	0	2	2	11	11

주 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나. 이지스글로벌고배당리츠플러스부동산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Class A-e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2025.06.08 - 2026.06.07	20	20	0	0	13	14	7	8
2024.06.08 - 2025.06.07	23	23	0	0	3	4	20	20
2023.06.08 - 2024.06.07	26	25	0	0	4	3	23	23

주 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 이지스글로벌고배당리츠플러스부동산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Class C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2025.06.08 - 2026.06.07	31	31	0	0	22	23	8	9
2024.06.08 - 2025.06.07	35	35	1	1	5	5	31	31
2023.06.08 - 2024.06.07	38	36	1	1	4	4	35	35

주 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라. 이지스글로벌고배당리츠플러스부동산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Class C-e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2025.06.08 - 2026.06.07	23	23	1	1	14	15	9	10
2024.06.08 - 2025.06.07	28	28	1	1	6	6	23	23
2023.06.08 - 2024.06.07	34	32	1	1	7	7	28	28

주 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마. 이지스글로벌고배당리츠플러스부동산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Class C-F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2025.06.08 - 2026.06.07	20	21	0	0	0	0	20	22
2024.06.08 - 2025.06.07	20	20	0	0	0	0	20	21
2023.06.08 - 2024.06.07	20	19	0	0	0	0	20	20

주 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바. 이지스글로벌고배당리츠플러스부동산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Class C-P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2025.06.08 - 2026.06.07	2	2	0	0	2	2	1	1
2024.06.08 - 2025.06.07	3	3	0	0	1	1	2	2
2023.06.08 - 2024.06.07	4	4	0	0	1	1	3	3

주 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 이지스글로벌고배당리츠플러스부동산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Class C-Pe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2025.06.08 - 2026.06.07	11	12	0	0	7	8	5	5
2024.06.08 - 2025.06.07	13	13	1	2	3	3	11	12
2023.06.08 - 2024.06.07	17	16	1	1	4	4	13	13

주 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아. 이지스글로벌고배당리츠플러스부동산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Class C-P2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2025.06.08 - 2026.06.07	13	14	0	0	4	4	10	11
2024.06.08 - 2025.06.07	13	14	1	1	1	1	13	14
2023.06.08 - 2024.06.07	12	13	2	2	1	1	13	14

주 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 이지스글로벌고배당리츠플러스부동산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Class C-P2e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2025.06.08 - 2026.06.07	17	18	2	2	8	9	11	13
2024.06.08 - 2025.06.07	22	23	3	3	9	9	17	18
2023.06.08 - 2024.06.07	23	23	10	10	11	11	22	23

주 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차. 이지스글로벌고배당리츠플러스부동산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Class C-W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2025.06.08 - 2026.06.07	3	3	0	0	2	2	1	2
2024.06.08 - 2025.06.07	5	5	0	0	3	3	3	3
2023.06.08 - 2024.06.07	7	6	1	1	3	3	5	5

주 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카. 이지스글로벌고배당리츠플러스부동산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Class S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2025.06.08 - 2026.06.07	2	2	0	0	1	2	1	1
2024.06.08 - 2025.06.07	3	3	0	0	0	0	2	2
2023.06.08 - 2024.06.07	3	3	0	0	1	1	3	3

주 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타. 이지스글로벌고배당리츠플러스부동산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Class S-P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2025.06.08 - 2026.06.07	1	1	0	0	1	1	0	0
2024.06.08 - 2025.06.07	2	2	0	0	1	1	1	1
2023.06.08 - 2024.06.07	6	6	1	1	5	4	2	2

주 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파. 이지스글로벌고배당리츠플러스부동산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Class S-P2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2025.06.08 - 2026.06.07	0	0	0	0	0	0	0	0
2024.06.08 - 2025.06.07	1	1	0	0	0	0	0	0
2023.06.08 - 2024.06.07	1	1	0	0	0	0	1	1

주 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을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기준)

(단위 : %)

종류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3 년	최근 5 년	설정일 이후
	25.06.23 ~ 26.06.22	24.06.23 ~ 26.06.22	23.06.23 ~ 26.06.22	21.06.23 ~ 26.06.22	20.06.08 ~ 26.06.22
이지스글로벌고 배당리츠플러스 부동산투자신탁 (리츠-재간접형)	10.12	7.50	6.89	0.10	3.66
비교지수	11.53	11.77	9.65	2.20	5.19
수익률 변동성	10.21	12.03	13.31	15.15	14.72
이지스글로벌고 배당리츠플러스 부동산투자신탁 (리츠-재간접형) Class A	8.53	5.95	5.35	-1.36	2.16
비교지수	11.53	11.77	9.65	2.20	5.19
이지스글로벌고 배당리츠플러스 부동산투자신탁 (리츠-재간접형) Class A-e	8.85	6.26	5.66	-1.06	2.46
비교지수	11.53	11.77	9.65	2.20	5.19
이지스글로벌고 배당리츠플러스 부동산투자신탁 (리츠-재간접형) Class C	8.12	5.55	4.95	-1.73	1.78
비교지수	11.53	11.77	9.65	2.20	5.19

이지스글로벌고 배당리츠플러스 부동산투자신탁 (리츠-재간접형) Class C-e	8.65	6.06	5.46	-1.25	2.27
비교지수	11.53	11.77	9.65	2.20	5.19
이지스글로벌고 배당리츠플러스 부동산투자신탁 (리츠-재간접형) Class C-F	9.14	6.55	5.94	-0.80	2.74
비교지수	11.53	11.77	9.65	2.20	5.19
이지스글로벌고 배당리츠플러스 부동산투자신탁 (리츠-재간접형) Class C-P	8.49	5.91	5.31	-1.40	2.12
비교지수	11.53	11.77	9.65	2.20	5.19
이지스글로벌고 배당리츠플러스 부동산투자신탁 (리츠-재간접형) Class C-Pe	8.83	6.24	5.64	-1.08	2.44
비교지수	11.53	11.77	9.65	2.20	5.19
이지스글로벌고 배당리츠플러스 부동산투자신탁 (리츠-재간접형) Class C-P2	8.78	6.20	5.60	-1.12	3.28
비교지수	11.53	11.77	9.65	2.20	6.75
이지스글로벌고 배당리츠플러스 부동산투자신탁 (리츠-재간접형) Class C-P2e	8.98	6.39	5.78	-0.95	3.20
비교지수	11.53	11.77	9.65	2.20	6.49
이지스글로벌고 배당리츠플러스 부동산투자신탁 (리츠-재간접형) Class C-W	9.17	6.58	5.97	-	1.64
비교지수	11.53	11.77	9.65	-	1.89

이지스글로벌고 배당리츠플러스 부동산투자신탁 (리츠-재간접형) Class S	8.93	6.34	5.73	-0.99	2.53
비교지수	11.53	11.77	9.65	2.20	5.19
이지스글로벌고 배당리츠플러스 부동산투자신탁 (리츠-재간접형) Class S-P	8.96	6.37	5.76	-0.97	2.59
비교지수	11.53	11.77	9.65	2.20	5.41
이지스글로벌고 배당리츠플러스 부동산투자신탁 (리츠-재간접형) Class S-P2	8.99	6.40	5.79	-0.93	3.29
비교지수	11.53	11.77	9.65	2.20	6.27

주 1) 비교지수: FTSE EPRA NAREIT Developed index Total Return USD 90 % + MMI Call 10%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4)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를 의미합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단위 : %)

종류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3 년	최근 4 년	최근 5 년
	25.06.23 ~ 26.06.22	24.06.23 ~ 25.06.22	23.06.23 ~ 24.06.22	22.06.23 ~ 23.06.22	21.06.23 ~ 22.06.22
이지스글로벌고 배당리츠플 러스부동산투 자신탁(리츠- 재간접형)	10.12	4.95	5.68	-7.46	-11.10
비교지수	11.53	12.00	5.54	-2.25	-13.48
이지스글로벌고 배당리츠플 러스부동산투 자신탁(리츠- 재간접형) Class A	8.53	3.43	4.16	-8.81	-12.41
비교지수	11.53	12.00	5.54	-2.25	-13.48

이지스글로벌 고배당리츠플 러스부동산투 자신탁(리츠- 재간접형) Class A-e	8.85	3.74	4.46	-8.54	-12.15
비교지수	11.53	12.00	5.54	-2.25	-13.48
이지스글로벌 고배당리츠플 러스부동산투 자신탁(리츠- 재간접형) Class C	8.12	3.04	3.77	-9.16	-12.75
비교지수	11.53	12.00	5.54	-2.25	-13.48
이지스글로벌 고배당리츠플 러스부동산투 자신탁(리츠- 재간접형) Class C-e	8.65	3.54	4.27	-8.71	-12.32
비교지수	11.53	12.00	5.54	-2.25	-13.48
이지스글로벌 고배당리츠플 러스부동산투 자신탁(리츠- 재간접형) Class C-F	9.14	4.01	4.74	-8.29	-11.91
비교지수	11.53	12.00	5.54	-2.25	-13.48
이지스글로벌 고배당리츠플 러스부동산투 자신탁(리츠- 재간접형) Class C-P	8.49	3.39	4.12	-8.85	-12.45
비교지수	11.53	12.00	5.54	-2.25	-13.48
이지스글로벌 고배당리츠플 러스부동산투 자신탁(리츠- 재간접형) Class C-Pe	8.83	3.72	4.44	-8.56	-12.17
비교지수	11.53	12.00	5.54	-2.25	-13.48

이지스글로벌 고배당리츠플 러스부동산투 자신탁(리츠- 재간접형) Class C-P2	8.78	3.67	4.40	-8.59	-12.20
비교지수	11.53	12.00	5.54	-2.25	-13.48
이지스글로벌 고배당리츠플 러스부동산투 자신탁(리츠- 재간접형) Class C-P2e	8.98	3.86	4.59	-8.43	-12.04
비교지수	11.53	12.00	5.54	-2.25	-13.48
이지스글로벌 고배당리츠플 러스부동산투 자신탁(리츠- 재간접형) Class C-W	9.17	4.04	4.77	-8.97	0.00
비교지수	11.53	12.00	5.54	-2.25	-15.91
이지스글로벌 고배당리츠플 러스부동산투 자신탁(리츠- 재간접형) Class S	8.93	3.81	4.54	-8.47	-12.09
비교지수	11.53	12.00	5.54	-2.25	-13.48
이지스글로벌 고배당리츠플 러스부동산투 자신탁(리츠- 재간접형) Class S-P	8.96	3.84	4.57	-8.45	-12.06
비교지수	11.53	12.00	5.54	-2.25	-13.48
이지스글로벌 고배당리츠플 러스부동산투 자신탁(리츠- 재간접형) Class S-P2	8.99	3.87	4.60	-8.42	-12.03
비교지수	11.53	12.00	5.54	-2.25	-13.48

주 1) 비교지수: FTSE EPRA NAREIT Developed index Total Return USD 90 % + MMI Call 10%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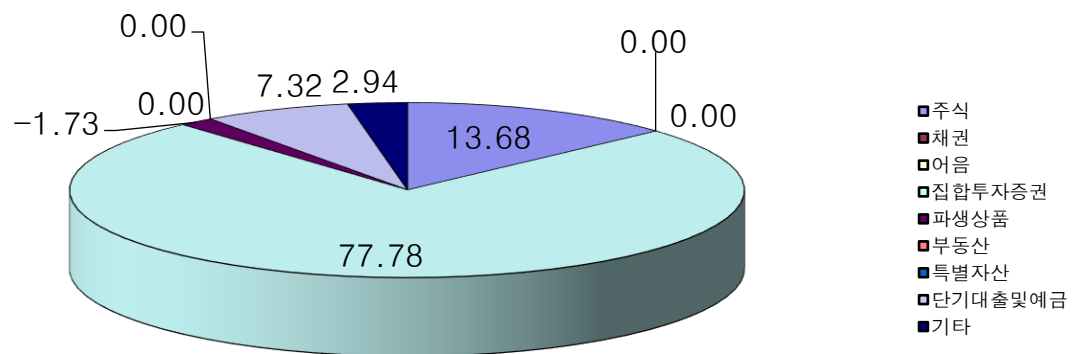
주 3)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 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 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 년 미만인 경우(예:8 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6)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 년 미만인 경우(예:8 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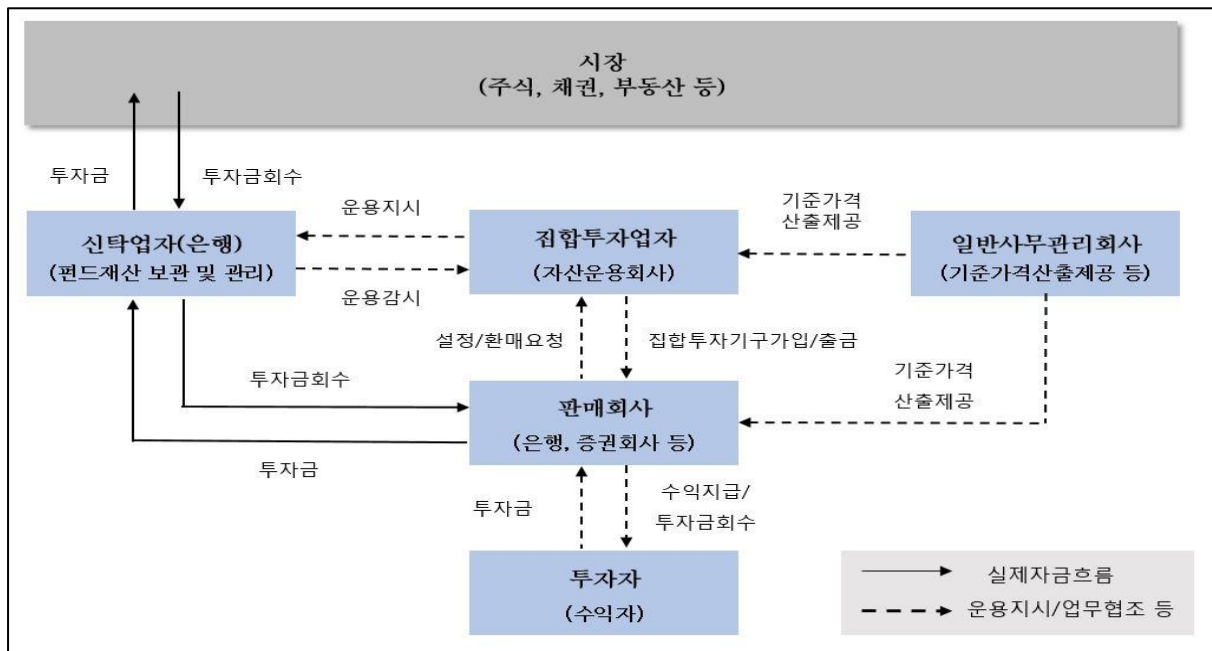


[2026.06.07 기준 / 단위 : 억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0	0	0	0	0	0	1	3	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4.81)	(75.19)	(4.00)
USD	1	0	0	56	0	-1	0	0	0	2	0	58
	(1.53)	(0.00)	(0.00)	(96.99)	(0.00)	-(1.90)	(0.00)	(0.00)	(0.00)	(3.38)	(0.00)	(64.00)
GBP	0	0	0	2	0	0	0	0	0	0	0	2
	(0.00)	(0.00)	(0.00)	(79.51)	(0.00)	-(2.08)	(0.00)	(0.00)	(0.00)	(22.57)	(0.00)	(2.00)
SEK	1	0	0	0	0	0	0	0	0	0	0	1
	(96.49)	(0.00)	(0.00)	(0.00)	(0.00)	-(2.28)	(0.00)	(0.00)	(0.00)	(5.79)	(0.00)	(1.00)
EUR	2	0	0	3	0	0	0	0	0	1	0	6
	(28.98)	(0.00)	(0.00)	(59.11)	(0.00)	-(1.76)	(0.00)	(0.00)	(0.00)	(13.68)	(0.00)	(6.00)
CAD	0	0	0	3	0	0	0	0	0	0	0	3
	(0.00)	(0.00)	(0.00)	(90.19)	(0.00)	-(0.91)	(0.00)	(0.00)	(0.00)	(10.72)	(0.00)	(4.00)
AUD	0	0	0	4	0	0	0	0	0	0	0	4
	(0.00)	(0.00)	(0.00)	(91.62)	(0.00)	-(1.64)	(0.00)	(0.00)	(0.00)	(10.02)	(0.00)	(4.00)
HKD	3	0	0	0	0	0	0	0	0	1	0	3
	(84.28)	(0.00)	(0.00)	(0.00)	(0.00)	-(2.10)	(0.00)	(0.00)	(0.00)	(17.82)	(0.00)	(4.00)
JPY	5	0	0	1	0	0	0	0	0	1	0	7
	(71.94)	(0.00)	(0.00)	(20.61)	(0.00)	-(1.34)	(0.00)	(0.00)	(0.00)	(8.79)	(0.00)	(8.00)
SGD	1	0	0	1	0	0	0	0	0	1	0	3
	(37.39)	(0.00)	(0.00)	(46.32)	(0.00)	-(1.54)	(0.00)	(0.00)	(0.00)	(17.83)	(0.00)	(3.00)
합계	12	0	0	71	0	-2	0	0	0	7	3	91
	(13.68)	(0.00)	(0.00)	(77.78)	(0.00)	-(1.73)	(0.00)	(0.00)	(0.00)	(7.32)	(2.94)	(100.00)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투자자가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은행, 증권회사 등)에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한 금전 등을 납입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해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고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금전 등을 납입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판매회사에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신탁업자가 보관/관리하고 있는 투자신탁재산을 부동산, 증권 등에 투자하도록 운용지시합니다. 투자자(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한 운용결과에 대해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이지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여의도동, 세우빌딩) 14층 (연락처: 1544-7373, www.igisam.com)
회사연혁	- 2010.03: 회사설립(舊 피에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2012.05: 이지스자산운용 주식회사로 사명변경
자본금 (2026.03.31 기준)	8,469,266,500원
주요주주현황 (2026.03.31 기준)	손화자(12.40%), 지에프인베스트먼트㈜(9.90%), 대신증권(9.13%), (주)우미글로벌(9.08%), (주)금성백조주택(8.59%), 현대차증권㈜(6.59%), (주)한국토지신탁(5.31%), (주)태영건설(5.17%)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 ① 투자신탁의 설정·해지업무
- ② 투자신탁의 운용·운용지시업무

(2) 의무

- ① 선관의무: 집합투자업자는 주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 재산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 ② 충실의무: 집합투자업자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3) 책임

- ① 집합투자업자가 법령·신탁계약서·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주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② 투자신탁의 회계감사인이 주주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투자신탁 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사·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감사인과 집합투자업자의 이사·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 258 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는 법에 따라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년도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1) 연결재무상태표

(단위: 원)

과 목	제17(당)기말	제16(전)기말
기 간	2025.12.31.	2024.12.31.
I. 현금및예치금	167,692,239,621	277,459,396,392
II. 당기법인세자산	27,045,970	143,770,170
III. 당기손익_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688,055,923,086	528,045,448,631
IV. 기타포괄손익_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07,904,000	483,375,120
V. 관계기업투자	70,363,441,276	60,544,843,444
VI.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6,687,410,303	13,774,708,853
VII. 대출채권	6,235,615,917	31,697,123,946
VIII. 유형자산	10,378,691,267	51,892,505,976
IX. 사용권자산	5,236,496,376	9,309,360,126
X. 투자부동산	5,616,174,595	75,869,451,264
XI. 무형자산	6,445,918,789	6,933,441,739
XII. 이연법인세자산	112,055,816	186,960,677
XIII. 기타자산	148,691,004,182	136,199,923,368
자 산 총 계	1,117,421,978,180	1,197,350,580,378
I. 차입부채	407,215,409,388	492,275,517,246
II. 당기법인세부채	14,659,379,599	27,799,288,380
III. 충당부채	3,186,072,948	3,098,870,874
IV. 기타금융부채	73,481,595,765	94,684,953,179
V. 확정급여부채	-	-
VI. 이연법인세부채	28,255,655,989	20,302,406,675
VII. 기타부채	13,493,563,805	15,628,518,006
부 채 총 계	574,533,040,011	684,113,679,637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541,219,131,045	511,396,774,523
I. 자본금	8,469,266,500	8,469,266,500
II. 기타불입자본	117,533,270,646	130,756,843,476
III. 기타자본구성요소	-2,810,759,830	-6,503,925,535
IV. 이익잉여금	418,027,353,729	378,674,590,082
비지배지분	1,669,807,124	1,840,126,218
자 본 총 계	542,888,938,169	513,236,900,741
부채와 자본총계	1,117,421,978,180	1,197,350,580,378

(2) 연결포괄손익계산서

과 목	제17(당)기말	제16(전)기말
I. 영업수익	373,045,116,895	418,271,551,376
II. 영업비용	268,701,941,255	305,022,560,847
III. 영업이익	104,343,175,640	113,248,990,529
IV. 지분법손익	-16,645,259,651	-5,140,892,000
V. 영업외수익	13,791,948,316	14,563,945,166
VI. 영업외비용	5,308,789,492	9,803,699,418
V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96,181,074,813	112,868,344,277
VIII. 법인세비용	34,831,918,497	30,235,070,588
VIII. 당기순이익	61,349,156,316	82,633,273,689
IX. 기타포괄손익	515,739,294	-2,424,270,481
X. 총포괄이익	61,864,895,610	80,209,003,208
XII. 주당이익	3,416	4,652

라. 운용자산 규모

(2026 년 6 월 22 일 / 단위: 억원)

구분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파생형	혼합자산	총계
	혼합주식	혼합채권	재간접					
수탁고	1,127	1,300	810	289,469	12,405	1,467	15,415	322,491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연락처: 1588-9999, www.kbstar.com)

(1) 주요 업무

- ①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 ②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③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④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⑤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⑥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⑦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⑧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1) 의무

-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위의 내용에 따른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시행령 제269조 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내용에 따른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당사자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절한지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절한지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절한지 여부 /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69조 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

2) 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 258 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 263 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와 함께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회사명	신한펀드파트너스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여의도동, 현대차증권빌딩) 18,19,20층 (연락처: 02-2180-0760, www.shinhanfundpartners.com)

(1) 주요 업무

- ①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 ② 투자신탁의 결산 및 분배금 지급과 관련한 정보의 작성 및 제공 업무
- ③ 투자신탁보수 및 운용비용 등의 산정 업무
- ④ 기타 위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2)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집합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개요

회사명	KIS채권평가(주)	NICE피앤아이(주)	한국자산평가(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02-3215-1400, www.bond.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02-398-3900, www.nicepni.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 로 75 현대빌딩 (02-2251-1300, www.koreaap.com)

(2) 주요업무

투자신탁 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투자신탁에 제공하는 업무를 합니다.

- ① 채권시가평가 정보제공 업무
- ② 채권관련 자료 및 분석tool 제공업무
- ③ 자산평가 업무(부실채권 등 보유자산평가, ABS, MBS, 금리스왑 평가 등)
- ④ System 사업(채권운용지원시스템 BPO 제공, 통합신용위험 시스템 CRO제공 등)
- ⑤ 국내외 금융시장 정보수집, 조사, 연구 및 제공 업무
- ⑥ 채권관련 컨설팅 업무 등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 총회는 법령(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투자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서 소집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 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 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법 제 190 조 제 3 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서면 통지는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 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 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시행령 제 221 조 제 6 항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 221 조 제 7 항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법 제 190 조 제 3 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합산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로부터 6 개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합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위 '수익자총회의 소집' 내용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는 '의결권 행사방법'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는 '의결권 행사방법'을 준용하며,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 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 으로 봅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투자신탁의 종류(법 제 229 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4 의 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 80 조 제 1 항 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합병·분할·분할합병
 - 나. 법 제 420 조 제 3 항 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0 조 제 1 항 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6. 신탁업자의 변경,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가. 합병·분할·분할합병
 - 나.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 다. 법 제 184 조 제 4 항, 법 제 246 조 제 1 항 등 관련 관련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 라. 법 제 420 조 제 3 항 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 10 조 제 1 항 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바. 법시행령 제 245 조 제 5 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7. 그 밖의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 217 조에서 정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 188 조 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 193 조 제 2 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 193 조 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시행령 제 222 조 제 1 항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법 시행령 제 222 조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 193 조 제 2 항, 제 201 조 제 4 항, 제 191 조 제 3 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에 따른 환매연기의 효과, 절차 등에 준합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 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해당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포함한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 제 95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2.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4.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한다)와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그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설립 전에 신고된 경우에는 그 발기인을 말한다)
 2. 상법 제 401 조의 2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3.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법시행령 제 135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자
 4.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5. 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6. 그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7.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 3 조 제 1 항 제 15 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등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 그리고 이시스자산운용 홈페이지(www.igisam.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 6 조제 6 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집합투자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3. 최초설정일로부터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4. 최초설정일로부터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 미만인 경우

※ 소규모 투자신탁 투자자보호 방안

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투자신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소규모 투자신탁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규모 투자신탁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 (1)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한 후 6 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 원본액이 15 억원을 초과하지 못 할 경우, 그 날로부터 1 개월 이내 수익자총회 또는 다른 방식의 투자자 동의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2) 투자신탁이 최초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의해지 됩니다.
- (3)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방법 이외에도 '운용전략 등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과의 합병' 또는 '다른 모투자신탁으로의 자산 이전' 등의 방법으로 소규모 투자신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4) 집합투자업자가 '임의해지', '다른 투자신탁과의 합병' 및 '다른 모투자신탁으로의 자산 이전' 등의 방법으로 소규모 투자신탁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와 협의를 거쳐 정리방법 및 시기를 정하며,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투자신탁 등 세제혜택을 받는 소규모 투자신탁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연금사업자 및 판매회사와 협의하여 투자자의 세제적격 요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① 영업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 현황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3. 법 제 87 조 제 8 항 제 1 호 · 제 2 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 · 수수료와 그 비중

② 결산서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 32 조 제 1 항의 서류(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 전신 · 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 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법 제 230 조 제 3 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3 개월마다 1 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4.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투자신탁의 자산·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가.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 개월이 종료되는 날
 - 나. 회계기간의 말일
 - 다. 계약기간의 종료일
 - 라. 해지일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을 말한다) 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해당 운용기간"이라 한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3.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5.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6. 투자신탁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 개월, 6 개월, 9 개월 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7. 투자신탁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8. 투자신탁의 업종별·국가별 투자내역
9. 투자신탁의 결산 시 분배금 내역(결산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10.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 개 종목

11.투자신탁의 구조.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 개월, 6 개월, 9 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12.투자신탁이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4. 법 제 247 조 제 5 항 각 호의 사항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6.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가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신탁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법 제 230 조 제 3 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3.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법시행령 제 94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 집합투자재산의 순자산가치의 변동명세가 포함된 운용실적을 비교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투자신탁의 자산·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4.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선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충실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통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상 또는 배상은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합니다.

(2) 수시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 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법시행령 제 93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4.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 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 123 조 제 3 항 제 2 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5.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6.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법시행령 제 262 조 제 1 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최초설정일로부터 1 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이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임의해지 될 수 있다는 사실
8. 최초설정일로부터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이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가. 법 시행령 제 242 조 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10.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1.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 93 조 제 3 항에서 정하는 사항

-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www.igisam.com),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법 제 9 조 제 15 항 제 3 호 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 87 조 제 7 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법 제 9 조 제 15 항 제 3 호 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1. 법 제 87 조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구분	중개회사 선정에 관한 기준
기본원칙	① 회사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중개회사를 선정하고, 선정된 중개회사에 한하여 운용·매매 체결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구분	중개회사 선정에 관한 기준				
	② 회사가 중개회사간 수수료율을 차등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근거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조사분석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① 회사는 중개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조사분석서비스에 한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조사분석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조사분석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게 된 편익에 비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집합투자기구를 위한 조사분석서비스 이용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금융투자업규정 제 4-66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중개업자에게 지급한 매매수수료 중 조사분석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구분하여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평가기준	회사가 중개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평가항목	평가시 고려요인	평가자	가중치
	1	자산분석 서비스의 유용성 (운용/리서치 기여도)	- Market Strategy - 업종, 기업분석 - 리서치 지원 - 기업탐방 및 IR 지원 - 자문회의 및 세미나 개최	운용/리서치 담당자	70%
	2	정보제공 및 Settlement	- 자료, 시장동향, 신상품 정보 제공 - 회사 펀드 마케팅 기여 - Back Office 협조 능력	운용담당자 및 매매담당자	15%
	3	주문집행능력 및 비용	- 주문집행의 정확도 - 주문집행의 신속성 - 유리한 호가의 제공 - 오류발생 빈도 - 매매체결업무수수료 기준	매매담당자	15%
	항목별 종합집계				100%
※ 비용 또는 수익 항목, 항목별 종합집계에 대하여 평가담당자는 단순 계산업무만 수행 ※ 평가 및 적용주기는 매 1 년으로 함					
배정기준	① 회사는 선정된 중개회사에 대하여 매매주문 배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중개회사별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차등 배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계열회사인 중개회사에 대한 배분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선정된 중개회사에 한하여 배분비율의 범위 내에서 중개를 위탁하여야 한다.				

구분	중개회사 선정에 관한 기준
미선정 중개사와의 거래승인	회사는 선정된 중개회사에 한정하여 매매를 위탁하는 것이 곤란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미리 매매담당 부서장 및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중개회사로 선정되지 아니한 중개회사에게 매매를 위탁하거나 배분계획과 달리 위탁할 수 있다. 1.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그 파생상품 거래와 연계하여 주식, 채권 등을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거래자산, 운용전략 또는 매매방법이 특수한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3. Block Trading 을 하는 경우 4. 각 집합투자기구의 전체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5. 기업분석 및 시장동향 등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운용 및 리서치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판단되어 운용업무담당 임원이 승인하는 경우
확인 및 점검	① 담당부서는 중개회사의 평가, 선정 및 배분계획 수립에 대하여 그 절차 및 결과가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과 실제 위탁내역을 매 분기별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매매주문 배분계획과 실제 위탁내역이 다른 경우 준법감시인은 담당부서장에게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구분	중개회사 선정에 관한 기준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증권 거래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은 이지스자산운용(주) 내부통제 기준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①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할 때 투자자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 2. 거래 유형(예: 상장주식 블록매매, 장외주식매매, 파생거래, 채권매매 등)에 따른 매매체결 능력 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②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할 때 자기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조건으로 매매주문을 위탁하기로 약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개회사에 대한 수수료는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과 양, 다른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정당한 근거나 사유없이 중개회사간 수수료를 차별하거나 특히 관계회사 등에 대하여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우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매매담당자는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계획된 배분비율에 의하여 중개회사에 매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매매대상자산 또는 매매방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개회사에 매매를 위탁하거나 매매주문 배분계획을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미리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달리 위탁할 수 있다. ⑤ 준법감시인은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과 실제 매매내역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게 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투자주체	이지스자산운용(주)
투자목적	고유재산의 운용 효율을 도모하고 집합투자기구 운용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투자시기	최초설정일
투자금액	2억원
투자기간	최초설정일부터 최소 3년 이상. 다만, 3년 이전에 투자신탁 신탁계약이료하는 경우 신탁계약서상 존속기한까지
투자금 회수계획	투자기간 이후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금이 펀드 수탁고의 5% 미만일 경우에는 일시 회수 가능함. 분할회수는 회차별로 1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며, 1회당 회수금액은 투자금의 50% 이내로 함. 투자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임.

6. 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붙임] 용어풀이

※ 증권신고서에 나오는 용어 중 별도 설명이 필요한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한다.

용 어	내 용
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집합투자기구(=펀드)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투자신탁, 투자회사, 뮤추얼펀드, 투자기구 등으로 불리우나 "펀드"라는 용어로 가장 널리 불리웁니다.
신탁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 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이상을 부동산(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 포함)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순자산	펀드의 투자원금 및 운용성과를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신탁보수	펀드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 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 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용 어	내 용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투자자총회	신탁계약서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설정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존속기한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손익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다만, 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특정기간 이내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됩니다.